



국 토 교 통 부



수신 경기도지사(건축디자인과장)
(경유)

제목 관원질의 회신(주택 외의 시설 공동사업 가능 여부)

1. 경기도 건축디자인과-16504(2021. 8. 5.)호 관련입니다.
2. 「주택법」 제15조제1항과 관련한 질의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.
 - (질의내용) 「주택법」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제4항 규정에 의거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하여 「건축법」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시, 「주택법」 제5조에 따른 토지소유자가 주택건설등록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지 여부?
 - (답변내용) 「주택법」 제5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따르면 토지소유자가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법 제4조에 의거한 등록사업자와 공동사업주체로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고, 이때, 토지소유자와 등록사업자는 소정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.
 - 따라서, 귀 질의의 사업이 「주택법」 상 사업계획승인 대상이 아니라면 「건축법」 상 건축허가 대상이므로, 위 규정에 따른 토지소유자가 등록사업자와 공동사업주체로서 사업을 시행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. 끝.

국토교통부장관



주무관 김민성 행정사무관 전결 2021. 8. 6.
강치득

협조자

시행 주택정책과-6247 (2021. 8. 6.) 접수 건축디자인과-16672 (2021. 8. 6.)

우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(어진동) 6동 / <http://www.molit.go.kr>

전화번호 044-201-3332 팩스번호 044-201-5529 / shedink1@molit.go.kr / 부분공개(5)